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u>제1장</u> 현황	7
1. 지리와 환경	9
2. 명칭	11
<u>제2장</u>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 역사적 사실과 증거	13
1. 언제 독도는 우리 영토가 되었는가?	14
2. 안용복과 일본에 의한 조선의 독도 영유권 인정	16
3.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한 19세기 후반 일본 측 자료	18
4. 일본 제국주의의 부상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22
<u>제3장</u> 결론은 단 하나	35
• 독도 현황	39



독도:

6세기 이래의 우리 영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독도(獨島)는 지난 천 오백년간 우리의 영토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명백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한일양국 관계를 손상시키고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독도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과 공식문서에 의해 증명되고 있으며, 일본 스스로도 수차례에 걸쳐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한 역사적 선례가 있다. 일본은 이러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슬프게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잔혹한 일제 강점기의 아픈 기억들을 회상하게 하고, 일본과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자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다음의 글에서 증명되는 바와 같이,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일본은 확립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왜곡하면서까지 독도에 대한 그들의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과거 일본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행한 과거사 사죄 발언이 공허한 말장난이나 정치적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우리 국민의 확신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1장

현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

중국

블라디보스토크

동해

울릉도

독도

한국

일본

오사카

황해

대한해협

후쿠오카

제주도

상하이

동북아시아역사재단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지리와 환경

독도는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중간쯤에 위치한 섬이다(북위 37° 14' 26.8, 동경 131° 52' 10.4). 실제, 독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여러 도서지형물의 집합체이다. 즉,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두 개의 주 섬과 주변에 산재한 89개의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도와 서도의 면적은 각각 73,297m², 88,740m²이며, 독도 전체의 면적은 187,554m²이다.

독도는 독특한 생태계를 갖고 있다. 현재 서도에서는 소량의 담수가 생산되고 있으며, 독도를 덮고 있는 얇은 토양과 이끼로 덮인 화산암들은 70~80종의 식물과 22종의 조류(鳥類) 그리고 37종의 곤충들의 서식지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섬 주변 해역은 강치와 100여 종의 어류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독도는 수백 년간 우리 어부들의 임시 정박지로 이용되어



왔으나 항구적으로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에 이르러서다. 즉, 같은해 4월 대한민국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최초의 독도 거주민이 되었으며, 독도의 용수비대는 1956년 12월 대한민국 경찰에 독도 수비업무를 공식적으로 이양(移讓)할 때까지 약 3년 반 동안 섬의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독도는 국토의 최동단(最東端)으로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중요성외에도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서 조업하는 우리 어부들에 의해 임시 대피소로 활용되고, 대한민국의 최동단 지진 관측소 및 천체 관측소로 이용되는 등 실질적 중요성도 제공해 오고 있다.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생각해 왔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남동쪽으로 87.4km 떨어져 있으며,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 주변에서 조업을 해왔으며 독도의용수비대 33명도 모두 울릉도 주민이었던 것이다.

2. 명칭

오늘날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이 섬을 각각 ‘독도’와 ‘다케시마’라 부른다. 그러나 이 명칭들이 채택되기 전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독도를 호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독도는 한국 역사상, 우산도(于山島), 삼봉도(三峯島), 가지도(可支島), 석도(石島)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 왔다(한국어에서 접미어 ‘도’는 섬을 의미). 그러나 이러한 이름 중에서도 우산도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었고,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석도와 독도가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석도와 독도는 ‘돌섬’ 혹은 ‘독섬’의 한문표기이며, 독섬은 울릉도 방언으로 바위섬을 의미한다. 즉, ‘독섬’이 그 의미에 따라 한문으로 옮겨졌을 때 ‘석도(石島)’라고 표기되는 것이며, 발음에 따라 한문으로 옮겨졌을 때 ‘독도’라고 표기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1905년에야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기 시작하였



다. 일본인들도 독도를 호칭하기 위해 마츠시마(松島), 리양꼬도(リヤンコ島), 다케시마(竹島)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해 왔다. 특히, 주목을 끄는 점은 일본인들이 독도를 마츠시마(松島)로,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호칭해오다 17세기 후반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가 금지된 이후 지명상 혼란을 겪다가 1905년 갑자기 독도를 다케시마로 변경하여 호칭하기 시작하였다. 1667년 일본에서 출간된 풍토기(風土記)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독도와 울릉도는 각각 마츠시마(송도)와 다케시마(죽도)로 표기되어 있다. 그때부터 독도를 지칭하는 일본 이름은 마츠시마였다. 19세기 후반 경부터는 리양꼬(또는 양꼬)라는 이름도 쓰였는데, 이는 서양세계에서 처음으로 독도를 목격한 프랑스 포경선 리양쿠르호의 일본식 표기이다. 당시 독도를 목격한 프랑스인들은 배의 이름(Liancourt)을 따서 독도를 ‘리양쿠르 암(Liancourt Rocks)’이라 명명했다. 그 후 리양쿠르 암은 서양인들이 독도를 호칭할 때 널리 사용하는 이름이 되었다. 1905년부터, 일본인들은 독도를 현재 명칭인 다케시마로 부르고 있으며, 이는 ‘대나무 섬’을 의미한다. 공식, 비공식을 막론한 어떤 일본 측 자료도 바위투성이 섬 독도가 왜 대나무 섬으로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제2장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 역사적 사실과 증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언제 독도는 우리의 영토가 되었는가?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근거는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512년에 신라의 이사부가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한 계교로써 우산국을 정복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당시 우산국의 영토는 울릉도 본 섬과 그 부속도서인 독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 두 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우리 조상들의 지리적 인식은 그 후 조선시대에 간행된 『세종실록지리지』(1454)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도 잘 나와 있다. 특히 이 두 가지 책에 수록된 팔도총도와 강원도지도에는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섬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한편, 독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일본 최초의 기록은 일본 이즈모(出雲)지방의 관료인 사이토 호센(齊藤豊仙)이 번주(藩主)의 명에 의해 편찬한 풍토기인 『은주시청합기』이다. 『은주시



청합기』는 “은주(隱州)는 북해 가운데 있다. 옛날에는 은기도(隱岐島)라고 했다.…… 북서쪽으로 1박 2일을 가면 송도(독도)가 있다. 또 이곳에서 다시 1일 낮을 가면 죽도(울릉도)가 있다.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이 섬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은주(雲州)에서 은기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북쪽경계는 이 주(오끼섬)를 한계로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은주시청합기』의 기록을 그들의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과 독도가 오끼섬의 부속도서라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해왔다. 그러나 은주시청합기의 “일본의 북쪽경계는 이 주(오끼섬)를 한계로 한다.”라는 구절은 우리 측에 의해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가 그들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은주시청합기』 (1667)

隱州在北海中 故云隱岐島…… 戌亥間行二日夜有松島 又一日程有竹島(俗言磯竹島 多竹漁海鹿 按神書所謂五十猛獸)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如自雲州望隱州 故日本之乾地 以此州爲限矣



2. 안용복과 일본에 의한 조선의 독도 영유권 인정

17세기 말에 소위 ‘안용복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독도의 역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 그 이유는 당시 조선의 어부 안용복의 활동으로 조선과 일본이 최초로 정부차원의 외교적 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안용복은 숙종 19년(1693) 박어둔 이하 동료들과 함께 울릉도에서 어로활동을 하던중 일본 오오야(大容) 가문의 어부들과 충돌하여 일본으로 납치당하게 된다. 일본에 도착한 안용복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고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안용복의 이러한 활동을 매개로 한·일 정부간에는 울릉도를 둘러싼 교섭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일본 막부정권은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침범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안용복은 이의 근절을 위해 그의 두 번째 도일을 감행하게 된다.

1696년 일본인들의 침입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릉도에 입도(入島)한 안용복은 거기서 일본인 어부들과 다시 조우하게 되며, 결국 일본인 어부들을 쫓아 일본을 재차 방문하게 된다. 다시 오끼도주 앞에 선 안용복은 일본인들의 계속되는 침범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용복의 1차 도일이후 발생한 한·일간 울릉도 영유권 교섭 결과,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고 양도(兩島)에 대한 일본인들의 도해(渡海)를 금지하였던 것이다.

일본학자들은 안용복의 활동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그의 진술이 거짓이라 하며 역사적인 안용복의 도일활동 결과를 부정하려 하지만, 안용복 사건은 일본 측 자료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안용복의 활동을 기록한 일본 측 자료로는 『죽도기사(竹島紀事)』,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이본백기지(異本伯著誌)』, 『죽도고(竹島考)』, 『인부연표(因府年表)』 등이 있다.



3.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한 19세기 후반 일본 측 자료

1)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1868년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하고 신정부를 수립한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1869년에 3인의 외무성 관료를 조선에 보내어 조선의 사정을 염탐하도록 지시하면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되어 있는 전말”까지 조사하도록 하였다. 동 외무성 관료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1870년에 작성한 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는 다음과 같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된 전말을 설명하고 있다.



“죽도와 송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

이 건의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의 이웃 섬으로서, 송도의 건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게재된 서류도 없다. 죽도의 건에 대해서는 원록(元祿) 이후 잠시 동안 조선으로부터 거류를 위해 빌린 바 있다. 당시는 이전과 같이 무인도였다. 대나무 또는 대보다 큰 갈대가 자라며 인삼 등이 저절로 난다. 그밖에 해산물도 있을만큼 있다는 말을 들었다……”

一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
此儀ハ松島ハ竹島ノ隣島ニテ松島ノ儀ニ付是迄揚載セシ
書留モ無之竹島ノ儀ニ付テハ元祿廢後ハ暫クノ間朝鮮ヨ
リ居留ノ爲差遣シ置候處當時ハ以前ノ如ク無人ト相成竹
木又ハ竹ヨリ太キ葭ヲ産シ人參等自然ニ生シ其餘漁産モ
相應ニ有之趣相聞ヘ候事

2) 1877년 태정관 지령 : 근대 일본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할 수 없는 증거

메이지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에 내무성에 하달한 태정관 지령문은 일본이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당시, 일본 내무성은 관내의 지적(地籍) 조사와 지도 편찬 작업을 하고 있던 시마네현으로부터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현의 관할 지역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1876년 10월 16일자로 접수하게 된다. 이를 접수한 내무성은 시마네현이

제출한 부속 문서뿐만 아니라 17세기 말 일본과 조선사이의 왕복문서들을 모두 조사해 본 후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영토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성 단독으로 시마네현 관할 지역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하달하지 못하고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의 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듬해인 1877년 3월 17일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태정관에 제출하게 된다.

“일본해내 죽도 외 일도 지적 편찬에 대한 질의서

(日本海內 竹島外一島 地籍編纂方伺)

……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들었지만, 영토의 처리 문제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품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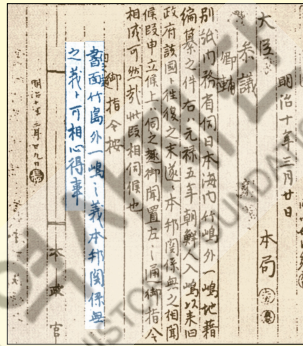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 문서에서 ‘죽도 외 일도(竹島外一島)’의 ‘일도(一島)’가 바로 독도라는 사실이다. 즉 송도(독도)에 대해서는 ‘외 일도’로 이름 없이 취급한 다음 별지 서류에서 다시 “다음에 섬이 하나 있는데 송도라고 부른다. 둘레의 주위 30정보 정도이며, 죽도와 동일한 뱃길 상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섬이 송도 즉 독도임을 밝히고 있다. 울릉도 인근 동해상에서 위 문서상의 묘사에 부합하는 섬은 오로지 독도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에 대해 품

의 하였던 것이다.

이 질의서를 검토한 후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자로 다음과 같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하게 된다.

**“별지 내무성이 품의한 일본해
내 죽도 외 일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건**

위는 원록 5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구정부와 조선간의 문서왕복의 결과 마침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들어 상신한 품의의 취지를 듣고 다음과 같이 지령을 작성하여 품의합니다.



태정관 지령문(1877)

지령안

품의한 취지의 죽도와 일도의 건에 대하여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위 지령문에 명시된 것처럼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공문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4. 일본 제국주의의 부상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1)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기괴한 논리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의 차국 영토 편입을 선언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행하게 된다. 일본인들은 동 고시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인용해왔다. 그러나, 일본인 자신들도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영토편입 조치의 국제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동 조치의 효력에 대해 일본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주장은 무주지 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바탕을 둔 것으로, 독도는 이전부터 주인이 없는 땅 즉 무주지(terra nullius)로서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고유영토설(固有領土說)



에 바탕을 둔 것으로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고, 1905년 조치는 그 사실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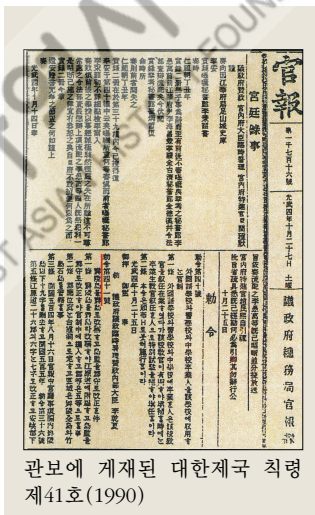
특히 주목할 점은 1905년 조치의 법적 효과에 대해 일본 정부조차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영토설’이 혼합된 기괴한 논리를 펴왔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28일의 내각결정에서 “이 무인도(독도)는 어떤 국가의 소유로도 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형적이 없다.”라고 하며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일본 정부는 독도를 “고대로부터 일본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 하며 기존의 무주지 선점론에 고유영토설을 혼합하였던 것이다(1953년 7월 13일자 및 1954년 2월 10일자 일본 측 구상서 참조). 즉, 일본인들은 1905년 불법적인 독도의 일본 영토편입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대로부터 자국의 고유영토였던 이 섬을 근대에 와서 다시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기괴한 논리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논리를 억지로 결합시켜 놓고도 아직까지 일본은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발표된 당시 독도는 결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 자체도 영토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의 유효한 법률적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첫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행해졌을 당시 독도가 무주



지였다는 일본 측 주장은 자기부정의 논리이다. 앞서 언급했던 1877년의 태정관 지령의 예로부터도 증명될 수 있듯이 한국(조선)의 독도 영유권은 일본 정부(도쿠가와 막부와 메이지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던 사실이다. 특히 시마네현 고시 5년 전인 1900년에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았다. 당시 대한제국은 황제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군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죽도(울릉도 연안의 소도), 석도(독도)까지 관할토록 정하면서 울릉도의 행정단위를 군으로 승격시켰다. 이 조치는 조선정부가 서울주재 일본 공사에게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직후에 취해졌으며, 동 칙령의 내용은 관보에도 게재된 만큼,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일본의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한 궤변이라 할 수 있다.



관보에 게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둘째, 위의 설명에서 추론될 수 있듯이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섬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한국정부에 독도 영토편입의 의사를 알리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1876년에 오가사와라 제도(The Bonin Islands)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 전 동경에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공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도 편입 시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의 의사로서 새로운 영토를 취득할 시에는 이 사실을 관련국에 통보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간의 관례이다. 물론 이러한 영토취득의사의 대외적 표시의무가 예외적으로 면제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예외는 유명한 팔마스섬 중재사건(1928)에서 찾을 수 있다. 동 중재사건에서 단독심을 맡았던 막스 후버(Max Huber) 판사는 문제가 된 팔마스섬은 유인도(인구 약 750명)로 이 섬의 거주자들은 타국이 동 도서를 점령하려 시도할 경우 이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통보의 의무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팔마스섬 중재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공시의무의 면제는 일본의 1905년 독도편입에는 결코 적용될 수 없다. 반복하자면, 적어도 1905년 1월의 내각결정이 있었던 그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당연히 관련국인 대한



제국 정부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할 의사가 있음을 알렸어야만 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고의로 이러한 공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일본인들이 불법적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독도의 영토편입을 추진한 이유는 일본인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가 작성한 사업경영개요(事業經營概要)와 그 당시 일본이 처했던 국제정치 현실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2) 나카이의 사업경영개요 : 일본의 1905년 독도 영토편입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증거

나카이 요사부로는 강치어업에 종사하던 일본인이었다. 독도에서 강치가 잘 잡힌다는 것을 안 나카이는 1904년에 내무성, 농상공부 및 외무성에 ‘독도영토편입 및 대하원’이라는 것을 제출하여 동 섬을 일본 영토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줄 것을 청원하게 된다. 1911년 작성된 나카이의 사업경영개요는 1905년에 일본이 독도의 영토편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경영개요는 다음과 같이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섬이 울릉도에 부속한 조선의 영토라고 생각하여, 장차 통감부에 가서 할 바가 있지 않을까 하여 상경해서 여러 가지 획책 중에, 당시 수산국장 마키 보쿠신의 주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조선령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그 조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분주한 끝에, 당시의 수로국장 키모츠키 장군에 의뢰한 바 이 섬이 전적으로 무소속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영상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진술하여 이 섬을 우리 영토에 편입하고 또 대부해 줄 것을 내무, 외무, 농상무의 세 대신에게 원출하여, 원서를 내무성에 제출했더니 당시 내무국장은 이 시국에 즈음하여 조선의 영토일지 모르는 황량한 일개 불모의 암초를 취하여 여러 외국에게 아국이 조선 병탄의 야심이 있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이익은 극히 작운데 반하여 실행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여하히 진변해도 원출은 장차 각하 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좌절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곧바로 외무성으로 달려가서 당시의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와 상세히 논의하였다. 그는 시국이야말로 그 영토편입을 급히 필요로 하고 있다. 망루를 건축해서 무선 또는 해저전신을 설치하면 적함 감시상 극히 좋지 않겠는가. 특히 외교상 내무와 같은 고려를 요하지 않는다. 모름지기 속히 원서를 본성에 회부케 해야 한다고 의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섬은 드디어 우리 영토에 편입된 것이었다.



...本島ノ鬱陵島ヲ附屬シテ韓國ノ所領ナリト思ハルルヲ以テ將ニ統監府ニ就テ爲所アラントシ
 上京シテ種種劃策中時ノ水産局長牧朴眞氏ノ注意ニ由リテ必ラスシモ韓國領ニ屬セザルノ疑ヲ
 生ジ其調査ノ爲メ種種奔走ノ末時ノ水路部長肝付將軍斷定ニ賴リテ本島ノ全ク無所屬ナルコト
 ヲ確カメタリ依テ經營上必要ナル理由ヲ具陳シテ本島ヲ本邦領土ニ編入シ且フ貸付セラレンコ
 トヲ内務外務農商務ノ三大臣ニ願出テ願書ヲ内務省ニ提出シタルニ内務當局者ハ此時局ニ際シ
 (日露開戰中)韓國領地ノ疑アル莫荒タル一箇不毛ノ岩礁ヲ收メテ環視ノ諸外國ニ我國ガ韓國併
 呑ノ野心アルコトノ疑ヲ大ナラシムルハ利益ノ極メテ小ナルニ反シテ事體決シテ容易ナラスト
 如何ニ陳辨スルモ願出ハ將ニ却下セラレントシタリ
 斯クテ挫折スベキニアザルヲ以テ直ニ外務省ニ走り時ノ政務局長山座円二郎氏ニ就キ大ニ論
 陳スル所アリタリ氏ハ時局オレバコソ其領土編入ヲ急要トスルナリ望樓ヲ建築シ無線若クハ海
 底電信ヲ設置セバ敵艦監視上極メテ屈竟ナラスヤ特ニ外交上内務ノ如キ願慮ヲ要スルコトナン
 須ラク速カニ願書ヲ本省ニ回附セシムベレト意氣軒昂タリ此ノ如クニシテ本島ハ竟ニ本邦領土
 ニ編入セラレタリ
 明治三十八年二月二十二日其告示アルヤ本島經營權ノ獲得ニ就キ

나카이의 사업경영개요 (1911)

첫째와 둘째 밑줄 친 문장은 일본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강하게 추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음을 명확히 증언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밑줄 친 문장은 일본이 독도편입을 비밀리에 추진해야만 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본은 독도의 자국영토 편입이 알려져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우위를 견제하려는 서구 열강의 개입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밑줄 친 문장은 당시 일본의 독도편입이 전략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성 관리 야마자가 지적했듯이, 독도에 망루를 건설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있는 일본 해군에게 있어서는 매우 시급한 일이었다. 1904년 여름, 제정러시아는 발틱 함대

를 동북아시아 전역(戰域)으로 급파할 것을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 결국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은 독도의 일본 영토편입을 결정하였고, 2월 22일에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라는 형태로 동 결정을 고시하였다. 일본은 같은 해 8월에 독도 망루를 완성하고, 10월에는 독도와 울릉도, 일본의 이즈모쿠니를 연결하는 해저전선의 가설을 완료하였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독도와 울릉도 뿐 아니라 죽변, 울산, 거문도, 제주도 등 한국의 여러 곳에 20여개의 망루를 건설하여 운영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은 국제법적 타당성을 결여한 채,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은밀히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1905년 독도 영토편입의 불법성을 증언하는 다양한 일본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일본 측 자료에는 일본 해군성의 수로국이 1911년과 1920년에 각각 발간한 일본 수로지 제6권 및 제10권, 그리고 1933년에 발간된 조선연안수로지 등이 있다. 또한 1930년 일본의 저명한 학자인 히마다케



외국세력의 개입에 대한 일본의 우려와 민감성은 삼국간섭이란 쓰라린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은 청일전쟁 (1894-1895) 승리의 전리품으로 중국의 랴오둥 반도를 얻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서구 3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랴오둥 반도를 중국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3국과 군사적 대결을 할 자신이 없었던 일본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연히 일본은 10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독도의 편입을 은밀히 추진하였던 것이다.



세코는 학술잡지 『역사지리(歷史地理)』에 실린 그의 글에서 “다케시마(독도)와 마츠시마(울릉도)는 한국의 강원도에 속하며, 한국의 동쪽 경계를 이룬다.”라고 밝힌 바 있다.

3)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대한 한국의 최초 인지와 대응

일본은 불법적인 1905년 독도 영토편입조치를 합리화하는 계교의 하나로서, 당시 대한제국이 일본 측 조치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이 적절한 통고도 없이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고, 따라서 항의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들조차도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던 것이다. 즉 일본의 조치는 시마네현의 관보에도 실리지 않았으며, 현 지사의 이름으로 공표되었을 따름인 바, 국가의사의 대외적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일본의 1905년 독도 영토편입조치는 원인무효이며 한국령으로서 독도의 지위에 여하한 변화도 초래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국이 일본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것은 시마네현 고시가 있는 후 약 1년이 지나서이다. 1906년 3월 28일,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리들은 울릉군 군수에게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사실을 알렸으며, 그 후 이 사실은 서울의 중앙정부

에 보고되었다. 이 보고를 받은 내무대신 이지용은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을 단호히 거부했으며,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사실무근이라 하며, 이에 대한 사실 관계의 조사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외교적 수단에 의한 공식적 항의를 제기하지는 못하였다.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에 제1차 한일의정서(1904년 2월 23일)의 체결을 강제하였으며, 동 의정서의 결과 한반도에 들어온 2개 사단 규모의 군대와 수천 명의 헌병을 통해 대한제국에 대한 사실상의 군정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1904년 8월 22일의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대한제국에 대한 고문 정치를 행하다가, 1905년 11월 17일에는 제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의 체결을 강제하여 아예 대한제국의 외부(外部)를 폐지시켜 외교권을 강탈해갔다. 그리고 1906년 2월 1일부터는 서울에 일제 통감부(統監府)를 개청(開廳)하여 통감정치를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을 알았다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공식 항의를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매일신보는 1906년 5월 1일자 보도에서 '무변불유(無變不有; 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변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의 불법성을 보도하였고, 황성신문(1906년 5월 9일자)도 울릉 군수의 보고문을 인용 보도하는 등 간접적인 항의를 제기하였다.



4) 일본제국주의의 몰락과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의 회복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한 후, 더 이상 독도의 지위에 관한 한일간의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패전과 동시에 한국은 독립을 성취하고 전(全) 국토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의 규정에 의해 “폭력과 탐욕에 의해 획득한” 모든 영토를 포기하도록 강제되었던 것이다. 또한, 1945년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섬과 우리(연합국)가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한정되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1945년 항복 시에 포츠담 선언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특히,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를 통해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위에 열거한 4대섬으로 한정된 후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도서로 명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영토에 관해 규정하는 대일본강화조약(일명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본문 제2조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독도에 관한 언급이 누락되게 된다. 일본인들은 이를 두고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었던 독도가 다시 일본영



토로 환원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해석은 비이성적인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만일 일본의 주장이 맞다면 강화조약의 본문에 명기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이 한국의 섬이란 말인가. 한국령 도서의 수가 약 3,000개에 이르는 데, 그렇다면 그 섬들은 한국의 섬이 아니란 말인가. 의심의 여지없이 강화조약 본문은 한국의 섬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3장

결론은 단하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45년의 독립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도 회복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에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로 독도에 주소가 부여되었으며,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로 독도에 독자적인 지번이 부여되었다.

최근 들어 점증하고 있는 환경파괴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우려는 국토의 최동단 독도에도 예외 없이 반영되었다. 정부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82년 동 섬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하였으며, 1999년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2000년에는 환경부 고시 제2000-109호에 의해 '특정도서'로 지정되게 되었다.

독도는 더 이상 망망대해상의 외로운 섬이 아니다. 현재 약 40명의 경찰관과 3명의 등대관리인이 연중 독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 개 회사가 운영하는 두 대의 유람선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운항하고 있다. 울릉도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두 대의 유람선 덕분에 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토의 동쪽 끝 독도를 밟아보는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점증하는 독도 방문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인 생태계 보존 및 안전 조치를 강구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독도에 입도할 수 있는 방문자의 숫자는 하루 1880명, 1회 47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 국제법적 근거,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교환된 공식문서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스스로도 독도가 한국의 섬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일본은 제국주의적 영토침탈의 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을 들먹이며 무의미한 자기소모적 논쟁을 계속 해오고 있다.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표면화 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기도는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대한민국이 독립을 쟁취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이며, 과거 일본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행한 과거사 사죄 발언이 공허한 말장난이나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했음을 일본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본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채 이웃국가의 소중한 영토를 자국의 영토라고 우기는 행태로 인해 그 스스로를 동북아시아의 이웃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독도 현황

위치(좌표)	동도	북위 37° 14′ 26.8
		동경 131° 52′ 10.4
	서도	북위 37° 14′ 30.6
		동경 131° 51′ 54.6
거리	독도—울릉도	87.4 km
	독도—죽변 (경상북도)	216.8 km
	죽변—울릉도	130.3 km
	독도—오끼섬*	157.5 km
	동도—서도	151 m
면적	독도	187,554 m ²
	동도	73,297 m ²
	서도	88,740 m ²
	부속도서	25,517 m ²
높이	동도	98.6 m
	서도	168.5 m
둘레	동도	2.8 km
	서도	2.6 km
부속도서의 개수	89	

* 독도에 가장 가까운 일본섬

독도의 바다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경비정인 상봉호





독도

6세기 이래의 우리 영토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123
팩 스 02-2012-6186
www.historyfoundation.or.kr

이 책의 출판권과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